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4940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4.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5.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7.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8.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2. 26.

판 결 선 고 2016. 3. 18.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부과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3.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 1. 29.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2014. 3. 31. 및 같은 해 6. 30.을 기준하여 [redacted]시가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10.37%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에게 2014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 "부과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5호증의 1 내지 30,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자신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일 뿐 위 법조 소정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위 법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판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고 한다)"란, 출자법인이 상법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 주식이 발행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등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점, 출자법인을 오로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 이윤의 창출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조 소정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출자법인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물론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6756 판결 참조).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 본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법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정당세액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부과금액 - 감경액(=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부과금액 × 위 법조 제3호가 정한 비율 0.5 ×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유성욱

판사 장인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별지]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및 정당한 세액표

순번	피고	처분일자	부과금액		정당한 세액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7.10	20,506,400	2,629,020	19,443,790	2,492,790
2		2014.7.10	9,442,820	1,141,060	8,953,510	1,081,940
3		2014.7.18	42,204,660	5,410,850	40,017,670	5,130,470
4		2014.9.10	194,980,440	22,616,600	184,876,760	21,444,640
5		2014.9.23	385,130	77,030	365,180	73,040
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7.10	2,649,830	339,720	2,512,520	322,120
7		2014.7.10	13,750	1,760	13,050	1,670
8		2014.7.10	5,851,900	750,240	5,548,670	711,370
9		2014.7.10	1,862,680	238,800	1,766,170	226,430
10		2014.7.10	10,703,120	1,372,190	10,148,510	1,301,090
11		2014.7.10	27,280	3,490	25,880	3,310
12		2014.7.10	50,510	6,470	47,910	6,140
13		2014.7.10	3,148,560	403,660	2,985,420	382,750
14		2014.7.10	28,240,430	3,620,560	26,777,050	3,432,950
15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7.10	2,885,240	369,900	2,735,740	350,740
1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7.10	2,297,050	294,490	2,178,030	279,230
17		2014.7.10	6,181,120	792,450	5,860,830	751,390
18		2014.7.10	1,407,030	180,380	1,334,130	171,040
19		2014.7.21	4,518,600	579,300	4,284,460	549,2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20		2014.9.10	3,318,670	390,430	3,146,710	370,200
2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7.10	16,876,710	2,163,680	16,002,190	2,051,570
22		2014.7.18	36,316,130	4,655,970	34,434,240	4,414,710
23		2014.9.10	69,655,930	8,194,810	66,046,440	7,770,170
24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7.10	4,196,080	537,960	3,978,650	510,090
25		2014.9.10	746,470	87,820	707,800	83,270
2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7.10	4,288,480	549,800	4,066,260	521,310
27		2014.7.15	234,520	30,060	222,380	28,510
28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7.10	76,330	9,780	72,390	9,280
29		2014.7.10	1,210,390	155,170	1,147,680	147,130
30		2014.7.25	12,003,760	1,538,940	11,381,740	1,459,200
합 계			486,280,020	59,142,390	461,081,760	56,077,8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02

순번	과세대상
1	[redacted]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을

-끝-